

전략물자 수입관리제도에 관하여



김 학 도
상공부 무역협력과 사무관

최근의 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소련 및 동구권 국가와의 교역량이 활발해지면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의 규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관심에 비해 현실적으로 COCOM이나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상공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하였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앞으로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업계의 동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아갈 계획으로 있다.

본고에서는 대공산권 수출통제가 성립된 배경과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의 기본방향,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될 IC/DV 발급절차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 COCOM의 수출통제체제

1. COCOM의 설립배경

제2차 세계 대전후 공산주의 세력이 급속팽창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대소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차원에서 1949년 11월 22일 미국 및 유럽 6개국을 중심으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설립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제국의 군사력강화에 직결되는 첨단 및 이중물자와 고도기술의 대공산권 수출규제를 표방하면서 출발한 동제도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NATO가맹국(아이슬랜드 제외), 일본, 호주 등 17개 COCOM 회원국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8개 COCOM 협력국이 참여하고 있다.

2. COCOM의 운영

COCOM의 성격은 명문규정을 가진 국제조약이 아니고 반비밀적인 기구이며 비공식적 협의기구로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조약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는 기구이기 때문에 COCOM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한 비구속적 권고일 뿐이며

따라서 각 회원국이 각국의 수출통제계획을 통하여 COCOM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COCOM의 결정은 비로소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다.

수출통제대상품목은 '90년 3월 현재 COCOM 분류방식에 의해 163개 품목으로 이는 일반산업물자(International Industrial List) 116개, 군수물자(International Munitions List) 23개, 핵관련 물자(International Atomic Energy List) 24개이며, 일반산업물자로는 전자 및 통신기기, 금속기계류, 일반산업장비 등이 해당된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COCOM 회원국보다 강력한 수출통제대책을 추진해 왔고, 더욱이 '74년부터 수출통제에 국방부를 개입시키면서 당시의 데탕트 분위기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으로 COCOM 규제품목보다 더 많은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을 통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수출통제대상지역은 공산권 14개국으로 동독, 루마니아, 몽고, 베트남, 북한, 불가리아, 소련,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중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쿠바 등이며, 이중 아프가니스탄과 쿠바는 각국 정부의 재량에 의해 통제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구속적인 기구인 COCOM의 실효성은 회원국의 국내 입법과 이의 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COCOM 회원국은 COCOM에 의하여 통제되는 품목의 대공산권 유출방지를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수준이 향상된 COCOM 비회원국들을 통하여 통제대상 품목을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83년 COCOM 정기 총회 이후에는 제3국을 통한 대공산권 유출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회원국이 제3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제3국 국가들을 협력국이란 이름으로 COCOM 체제에 동참시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도 미국과 '87년 9월 쌍무협정을 체결하였고 협력국으로서 COCOM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내법적인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의 추진현황

1.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의 개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에 관하여는 상공부장관이 별도공고를 하여 수출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 별도공고를 고시하게 될 때에는 전략물자라 함은 전략물자 수출입 별도공고상 고시되는 품목을 의미하게 되나, 현재는 전략물자 수출입승인제도가 시행되기 전으로 대외무역법상 동공고를 고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개념정의를 모호하게 된다. 다만, 전략물자의 수입관리제도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전략물자라 함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IC를 발급받은 물품, 즉 COCOM 회원국의 수출통제규정에 의하여 COCOM 회원국에서 전략물자로 규정되어 수출자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입자가 IC 정구를 요구 받은 물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의 개념에 대하여는 전략물자가 수입되고 수출되는 수출입 전과정에 근거하여 개념정의를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되는 관계로 전략물자의 수출의 경우와 수입의 경우의 두가지로 나누어 정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의 경우는 국내 수출자가 공산권의 군사력 강화에 직결되는 전략물자(별도공고로 고시되는 품목에 한함)를 수출할 경우 정부의 수출심사를 거쳐 소련 등 공산제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이며, 둘째, 전략물자 수입의 경우는 국내 수입자가 COCOM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할 경우 수출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수입증명서(IC : Import Certificate) 및 통관증명서(DV : Delivery Verification)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동물품이 국내로 수입됨을 정부가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추진경위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COCOM 비회원국 중 일부 국가들이 첨단기술을 보유하게 되고 이들 국가중 상당수 국가는 COCOM 통제품목에 대한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자,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은 COCOM 비회원국을 통하여 통제대상품목의 우회적인 수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COCOM 회원국들은 1983년 정기총회에서 COCOM 통제품목의 제3국을 통한 대공산권 유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회원국이 이들 제3국과 각각 쌍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COCOM 회원국에 준하는 통제체제를 확립하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84년-87년에 걸쳐 쌍무협정 체결을 위한 3차례의 협의를 거쳐 1987년 9월 한·미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으며 동 양해각서 체결안이 1989년 3월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년 5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MOU의 이행조치로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기 위하여는 국내법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금까지 2차례의 한·미간 실무협의를 거쳐 통제에 대한 절차 마련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0년 1월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상공부내에 전담과인 무역협력과를 신설하였다.

3.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시행의 기본 방침

미국과 체결한 MOU에 따라 우리나라가 동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최근 미·소 기업간에 기술 합작이 늘고 개인용 컴퓨터, 광섬유 등 서방 첨단기술 제품들의 공산권진출이 늘고 있으며,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의 민주화 물결을 타고 COCOM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제범위내에서 국내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동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따라서, 먼저 제1단계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략물자 수입증명서(IC : Import Certificate) 및 전략물자 통관증명서(DV : Delivery Verification) 발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즉 전략물자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IC 및 DV를 발급하되 IC는 수출자가 요구할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해당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것임을 증명하고, DV는 세관장이 해당물품이 실제로 통관되었음을 확인, 증명하게 된다.

다음 제2단계로서 '91년중 전략물자 수출승인(EL : Export License)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전반적인 절차의 보완과 함께 통제대상품목리스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작업 결과를 토대로 금년 9월 예정인 한·미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3. 전략물자 수입관리제도 시행

1.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발급

가.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개념

전략물자 수입증명서(IC : Korean Import Certificate)란 수출국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국의 수입자가 확실히 수입국내로 해당물품을 수입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통인 국제수입증명서(IC :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를 발급해 주는 국가는 7개 COCOM 회원국과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이레, 싱가포르, 홍콩, 파키스탄 등으로서, 금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에 포함되게 된다.

한편, IC와 유사하나 독자적인 양식에 의해 정부기관이 수입증명을 해주는 나라의 서식은 스위스의 Swiss Blue Import Certificate, 유고의 Yugoslavia End-Use Certificate, 중국의 PRC End-Use Certificate, 인도의 Indian Import Certificate 등이며 기타 남아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17개국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여 최종사용증명을 해주고 있다.

나. 법적 근거

정부는 '84~'87년 3차례 한·미간 수출통제 협의를 추진하면서 종전의 무역거래법을 개정, '87년 6월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략물자를 수입하기 위하여 국제수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으로는 금번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제3장 제9절을 신설하여 발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년 3월 개최된 제2차 한·미 전략물자 수출통제실무협에서 논의된 IC제도의 시행력(enforceability)의 확보를 위하여 IC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IC 내용에 반하여 사전승인없이 당해물품을 제3국으로 유출하였거나 IC의 허위기재 또는 수입승인시 IC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등 위반사태 적발시 대외무역법 제68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당하거나 동법 제12조 무역업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동법 제17조의 무역대리업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다. 또한 IC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75조 공문서위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

다. 발급기관

상공부 상역국 무역협력과(전화번호 504-4148, 500-2592~3, 우편번호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제2청사 3동 715호)

에서 IC를 발급한다.

라. 발급대상품목

수출국(수출자)의 요구가 있는 품목에 한하여 IC를 발급해 주며, 이들 품목들은 수출국의 수출통제규정에 의거한 이중용도(dual-use) 물자에 해당된다.

한편, 군수물자에 대하여는 미국의 경우 USML(United States Munitions List)상의 품목은 종전에 미국무부 군수품통제과(Office of Munitions Control)에서 요구한 최종사용증명("Nontransfer and Use Certificate" 서식 사용)을 국방부(주요 방산물자의 경우) 및 상공부(일반 방산물자의 경우)에서 확인해 주었고, 향후 이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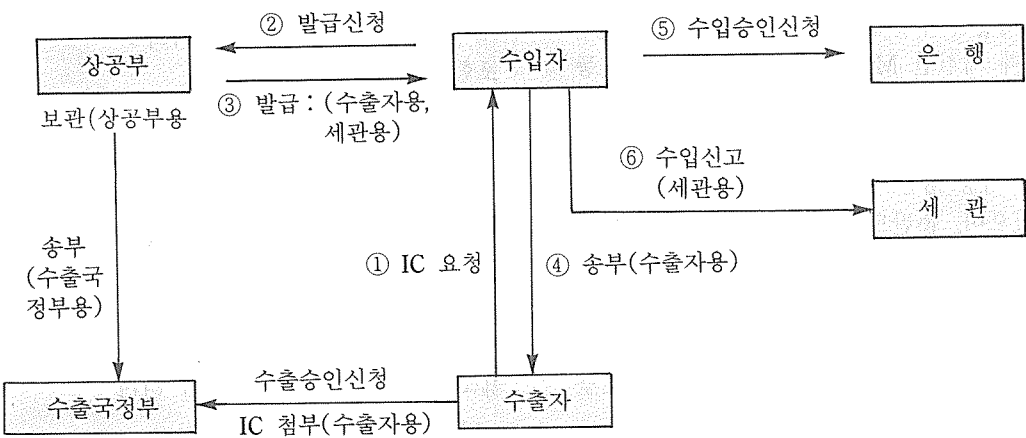
마. IC의 용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9절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상공부용)의 IC에 대한 각각의 용도를 IC 신청에서부터 발급, 사용까지의 단계별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도1> IC 발급절차도 참조)

(1) 한국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의 수출통제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수출자는 자국의 수출승인에 필요한 첨부서류로서 한국의 수입자에게 IC를 요청하게 된다.

(2) 수입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전략

<도1> IC 발급절차도



물자수입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11호 서식)에 전락물자 수입증명서(별지 제3-12호 서식) 4부,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인서 1부, IC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외국수출자로부터의 서면 1부 및 메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 수입품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상공부 무역협력과에 IC 발급을 신청한다.

(3) 상공부는 수입자에게 IC 4부 중 수출자용, 세관용 등 2부를 발급해 주고 나머지 2부 중 수출국정부용은 상공부에서 직접 수출국정부에 송부하고 1부는 상공부에서 보관하게 된다.

(4) 수입자는 발급받은 IC(수출자용)를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에 동 IC를 첨부하여 수출승인 신청을 하면, 수출국 정부는 한국의 상공부에서 송부한 IC(수출국정부용)와 대조 확인하여 수출승인을 한다.

(5) 한편, 수입자는 IC(세관용)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장의 수입승인을 받고 외국환 은행장은 수입승인서상에 “전략물자 수입증명서(IC) 발급물품”임을 표시한 후 IC(세관용)를 수입자에게 반환한다.

(6) 수입물품이 수출국정부로부터 선적되어 국내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할 때 수입자는 IC(세관용)를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마치고 물품을 인수받는다.

바. 기 타

IC 발급의 처리기간은 10일로 하며, 발급받은 IC는 6개월 이내에 상대국정부에 제출되어야 유효하다. 또한, IC를 발급받은 수입자가 거래가 완결되지 않거나 향후 수입사항이 변경되어 IC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발급받은 IC를 상공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만일 외국의 수출자에게 IC를 송부한 뒤 수입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IC(세관용) 1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발급

가.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개념

전략물자 통관증명서(DV : Korean Delivery

Verification Certificate)란 수출국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물품을 통관시킨 세관장이 당해물품이 실제로 통관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를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통관증명서(DV)는 통관이 되었다는 사실 확인에 불과한 서류이기 때문에 서식상의 내용에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당해 전략물자가 통관한 사실만을 세관장이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법적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0절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세청의 『전략물자 수입과 통관증명서 발급지침』에서 세부적인 발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 발급기관

당해물품통관세관에서 DV를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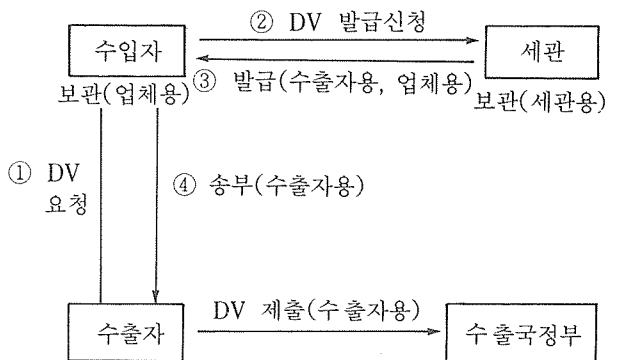
라. 발급 대상품목

전략물자 중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면서도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 수출국의 수출승인시 승인조건으로 DV 제출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수입국의 수출통제제도 완비상태나 수입자의 신뢰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DV를 요구하기도 한다.

마. DV의 용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0절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3부(수출자용, 업체용, 세관용)의 DV에 대한 각각의 용도를 DV 발급 신청에서부터 발급, 사용까지의 단계별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도2〉 DV 발급절차도 참조)

〈도2〉 DV 발급절차도



(1) 외국의 수출자가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국정부로부터 DV 제출은 요구받게 되면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뒤 한국의 수입자에게 DV를 요청하게 된다.

(2) 수입자는 수입통관한 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통관증명서(별지 제3-13호 서식) 3부에 수입면장 1부 및 선하증권(B/L)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DV 발급을 신청한다.

(3) 통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면장(보관분) 원본 및 전략물의 수입증명서 사본(보관분)과 신청사항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DV 3부 중 수출자용, 업체용 등 2부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게 된다. 이때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제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한 교부수수료를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입자는 발급받은 DV(수출자용)를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업체용 1부는 보관하며,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에 동 DV를 제출하게 되면 1건의 전략물자 수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바. 기타

DV 발급의 처리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3. IC/DV 발급제도 실시시 예상되는 효과

금년 7월 1일부터 IC/DV 발급제도를 시행하게 될 때 예상되는 효과를 보면, 긍정적 측면으로 첫째, 한·미간 MOU 상으로 합의한 대로 아국 정부의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 실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통상마찰 요인을 불식시킬 수 있다. 둘째, COCOM 회원국으로부터의 고도첨단제품 및 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COCOM 협력국이 됨에 따라 회원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에 회원국 정부의 수출승인 기간이 단축되어 첨단물품의 수입 및 기술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셋째, IC를 발급한 전략물자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향후 E/L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한편,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수입승인 신

청시 IC를 첨부서류함으로써 수입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된다. 즉, 시간, 인력, 행정비용 발생 등 수입절차상의 불편이 생기고, 외국환 은행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아직 전략물자 수출승인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IC를 발급받은 COCOM 회원국산 제품을 재수출할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략물자에 대한 E/L 제도의 조기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4. 전략물자 수출승인제도의 향후 추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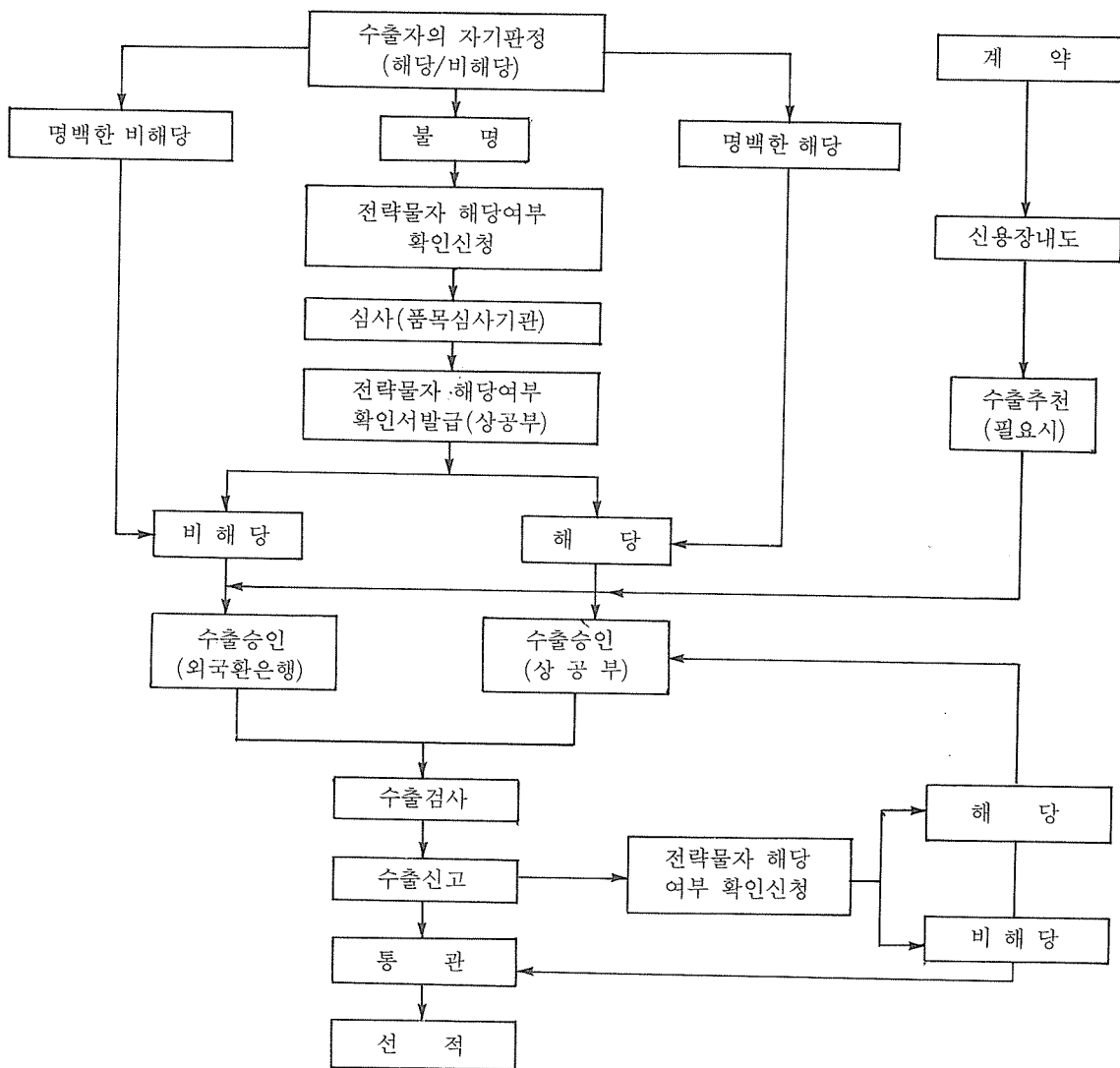
향후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승인(Export License) 제도의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민수용 첨단제품이면서 군수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 Use)의 일반산업물자, 군수물자 및 핵관련물자 등의 3개 분야별 품목을 수출승인 대상품목으로 하여 별도 공고로 고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승인대상물품으로 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물자의 수출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도 3> 전략물자 수출절차도 참조)

즉, 수출자가 판단하여 전략물자에 명백히 해당될 경우 또는 불명확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을 하고 품목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공부 무역협력과에서 수출승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수출승인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품목심사가 되는데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품목심사를 상공부에서 직접 담당한다는 것은 전문성 및 능률성 측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며 또한 연구소, 업계 등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에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품목심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품목심사 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수출승인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전략물자 수출승인을 실시할 때의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절차를 가능한 한

전략물자수출 절차도



간소화시키기 위하여, 주요 통제대상품목별로 관련 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을 사전에 분석, 정기적으로 전략물자 비해당품목을 공고하고, 기업내부통제제도(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 및 포괄수출 허가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대업체홍보를 통하여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며, 외국제도를 연구,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도 확립에 적극 활용하여 나아갈 계획으로 있다.

결국, 업계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가 대공산권 수출을 무조건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대공산권 수출을 통할함으로써 국내 수출업계가 외국의 COCOM 관련 규정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보호막을 형성해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절차의 복잡, 소요기일의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장애를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